

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238조 및 구미시세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: 28.979㎢

■ 읍지역 : 18개리 25.274㎢

- 선산읍 : 1개리 0.527㎢(죽장리일부)
- 고아읍 : 17개리 24.747㎢
 - 구미도시계획권 : 11개리 21.291㎢(원호1.2, 문성1.2.3, 다식, 괴평1.2, 송림, 봉한1.2일부지역)
 - 고아도시계획권 : 6개리 3.456㎢(관심1.2, 이례, 오로, 대망1, 화산리 일부지역)

■ 면지역 : 4개리 3.705㎢(신당1.2, 봉산1.2리 일부지역)

4. 참고사항

- 지방세법 제235조, 제238조, 시행령 제195조
- 구미시세조례 제83조, 제84조

5. 검토의견

- 도시계획법에 의거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235조 및 제238조, 시세조례 제84조에 의거 시장이 그 지역을 고시하고 조례에 의거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음.
- 금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3개 읍면(선산읍, 고아읍, 산동면) 18개리 28.979㎢ 도시계획 구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안임.
- 고아읍 도시계획구역(3.456㎢), 선산읍 도시계획구역 (6.435㎢중 금회 고시 : 0.527㎢, '95고시: 1.588㎢, 2001고시: 4.320㎢), 구미도시계획 구역중 미고시된 고아지역(21.291㎢), 4공단 조성지구인 산동면 일부 지역(3.705㎢)에 대해서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안임.
- 금번 28.979㎢를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 구미시 도시계획구역 전체인 총 168.218㎢에 대해서 부과지역으로 확정고시 됨.
(칠곡, 아포지역 제외)
- 타법이나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은 없으며 도시계획세에 대한 추가적인 세수증대가 예상됨.